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59 호 2026. 4. 30.(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92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29)].....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93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30)].....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94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31)].....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95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97호[도시계획시설(무룡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00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23)].....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02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09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25)].....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18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26)].....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19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27)].....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20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26-28)].....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27호[2026 2027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33호[「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9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생태정원과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30번지	하천의 명칭	태화강
점용 내용	토지의 점용 (태화강 수중·수변 폐기물 수거 사업)	점용 면적	일시: 0.724544㎡
점용 기간	일시: 2026. 4. 30. ~ 2026. 5. 17.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9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 공원녹지과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점 용 위 치	중산동 1166-29번지 외 1필지	하 천 명 칭	동천
점 용 내 용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408㎡)	점 용 면 적	408㎡
점 용 기 간	영구: 2026. 4. 30. ~ 영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9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한경엔지니어링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20번지	하천의 명칭	동천
점용 내용	지반조사(시추)	점용 면적	일시: 24㎡
점용 기간	일시: 2026. 4. 30. ~ 2026. 9. 31. (기간 중 2일)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9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호계동 259-1	동대16길 12	2026. 4. 29.	2026. 4. 30.	2009. 8. 20.	동대로에서 분기하여 도로명 부여함
달천동 1044-3	천마로 21	2026. 4. 29.	2026. 4. 30.	2023. 12. 28.	천마산 지명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대안동 506	대안4길 220	2026. 4. 29.	2026. 4. 30.	2004. 8. 9.	옛 지명인 대안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효문동 369-5 의 14	효문공단2로 52	2026. 4. 29.	2026. 4. 30.	2025. 2. 20.	효문공단 명칭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함
염포동 995-13	성내5길 4-1	2026. 4. 29.	2026. 4. 30.	2004. 1. 5.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597호

도시계획시설(무룡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무룡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산1-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무룡산공원)사업
 - 나. 명 칭 :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조성 사업
3. 사업규모 : 2,523m²
4.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공원녹지과)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과 같음
7.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공원녹지과
 - ※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공원녹지과(☎052-241-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1.제 목		
2.당 사 자	성명	
	주소	
3.의 견		
4.기 타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600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		
점용 위치	○ 산하동 1047번지 일원	노선명	○ 소1-82 (동해안로)
점용 목적	○ 전력관로 이설공사	점용 면적	○ L = 20.0m ○ A(일시) = 35.7㎡ ○ A(계속) = 19.2㎡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7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6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내 상공인 우선구매 규정이 지닌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및 차별적 규제를 정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이행
-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선”이라는 표현을 “촉진”으로 수정
(제명,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7조)
- 적용대상 관련 조례와 명칭 통일(안 제4조제1호)

3. 관계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경제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 전화번호 : 052)241-7277, 팩스번호 : 052)241-7709
- 3) 전자우편(E-mail) : ipyj80090@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를 “상품 구매를 촉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하급행정기관”을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u>상품을 우선 구매하여</u>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u>」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u>하급행정기관</u></p> <p>2. ~ 4. (생략)</p> <p>제5조(구매촉진) ① <u>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은 지역상품 <u>우선구매</u>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포함하여야</u> 한다.</p> <p>1. ~ 3. (생략)</p> <p>제7조(<u>우선구매</u>)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u>우선구매</u> 협조를 요</p>	<p><u>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상품 구매를 촉진하여</u> ----- -----.</p> <p>제4조(적용대상) ----- -----.</p> <p>1.----- ----- ----- <u>사업소, 하부행정기관</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구매촉진) ① ----- ----- <u>구매</u>----- -----.</p> <p>② ----- ----- <u>포함해야</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u>지역상품 구매</u>) ① ----- ----- ----- <u>구매</u> -----.</p>

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

-----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

③ -----

----- 노력
해야 -----.

관계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609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점용 위치	○ 효문동 824번지 외 (효문공단 일원)	노선명	○ 대3-14 (무룡로) ○ 대2-1 (염포로) ○ 중1-41 (무룡1로) ○ 중1-42 (산성로) ○ 중2-44 (숙보로) ○ 중3-387 (원연암2길) ○ 중2-43 (죽전로) ○ 중2-42 (활밤로) ○ 중2-41 (효문1로) ○ 중1-8 (효문2로) ○ 중1-40 (효암로) ○ 중1-9 (효자로)
점용 목적	○ 식물재배화분 및 하부관로 매설	점용 면적	○ L = 7,453m ○ A(일시) = 8,944㎡ ○ A(계속) = 2,606㎡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540일간 (18개월)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618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 박성수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효문동 357-2 (효죽3길 22)	노선명	○ 중1-42
점용 목적	○ 도시가스배관 이설공사	점용 면적	○ L = 6.0m ○ A(일시) = 10.8㎡ ○ A(계속) = 0.6㎡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619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 박성수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호계동 685-7번지 (호계4길 5-3)	노선명	○ 소2-151
점용 목적	○ 도시가스 인입공사	점용 면적	○ L = 7.0m ○ A(일시) = 34.2㎡ ○ A(계속) = 1.99㎡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620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 박성수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상안동 557-3번지 (시레새터길 246)	노선명	○ 소3-20
점용 목적	○ 도시가스 인입공사	점용 면적	○ L = 4.0m ○ A(일시) = 7.2m ² ○ A(계속) = 0.24m ²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627호

2026/2027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2027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2026. 6. 12.(금)**까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6. 04. 30. ~ 2026. 06. 12.
2. 개발대상 : 1건

개발구분	면허구분	면허종류	어업방법	면허번호	품종	면적(ha)
재개발	면허양식장	해조류양식	수하식	9	미역	11.5

3.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2층 농수산과 수산진흥팀
4. 신청자격 : 이 법에 정한 면허어업을 받으려는 자
5. 제출서류
 - 가. 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붙임참조)
 - 나. 수산기술자 자격·경력증명서(수산기술자만 해당)
 - 다.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양식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어업인만 해당)
 - 라. 어업·양식업 종사 사실 증명서류(어업인만 해당)
 -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법인) 증빙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9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면허양식장)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2. 3.>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 계획 내용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수산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여권번호 기재는 외국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6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추가(안 제5조제1호)
 - (개정) 마. 18세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3.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20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대응팀
- 2) 전화 : 052)241-8794, 팩스 : 052)241-8109

다. 기재내용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4) 의견서 : 하단 참조

6.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18세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인플루엔자 가. ~ 라. (생략)</p> <p><u><신설></u></p> <p>2. ~ 5. (생략)</p>	<p>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 ----- ----- ----- -----.</p> <p>1. -----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18세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u> <u>에 재학 중인 사람</u></p> <p>2. ~ 5.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